

OECD AI원칙 수립 및 향후 계획(상)

■ 김 병 우*

1. 개 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은 디지털변혁을 견인하는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AI는 생산성 향상, 효율성 증가 및 비용 절감을 실현시킴으로써 경제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정확한 예측과 판단을 통해 인간의 의사결정을 도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순기능과 동시에 AI에 대한 불안과 윤리적 우려도 심화되고 있다. AI 활용에 따른 일자리 대체, 편향된 AI의 결과와 그에 따른 활용, 개인정보침해 등 다양한 도전과제가 예상되고 있다.

AI 활용에 따른 혜택을 극대화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국가들과 AI 관련 기관들은 서로 앞 다투어 AI 전략 및 윤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다. OECD 회원국 및 파트너 국가 중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스웨인, 영국 및 미국은 AI 전략을 수립하였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덴마크, 일본 등 일부 국가는 더 광범위한 AI 관련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¹⁾ AI 윤리 가이드라인의 경우 AI 관련 기관 및 민간 사업자 중심으로 제정되고 있다. 2016년 전기전자협회(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EEE)에서는 AI와 관련한 윤리를 고려한 설계(Ethically Aligned Design) 원칙을 수립하였고, 미국 생명의 미래 연구소(Future of Life institute)에서는 2017년 아실로마 AI 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 연구원, (043)531-4346, kbw411@kisdi.re.kr

1) OECD (2019a), p.122

칙(Asilomar AI Principles)을 수립하였다.²⁾ 민간 사업자로는 IT 공룡 기업들인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IBM, 인텔 등이 AI원칙을 제정했으며 지역협력체로는 유럽연합(EU)이 AI 고위급 전문가그룹(High-Level Expert Group on AI, AI HLEG)을 창설하여 AI에 관한 이슈에 대응하고 AI원칙을 수립하였다.

우리나라도 AI에 따른 잠재적 혜택 및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지능정보사회 윤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은 지능정보기술 및 서비스 개발자, 공급자의 책임윤리를 강화하고 이용자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공통원칙(공공성·책임성·통제성·투명성) 및 개발자·공급자·이용자별 세부지침을 담은 지능정보기술 윤리의 기본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³⁾

개별 국가 단위의 AI 가이드라인은 우리나라 외에도 일본, 중국, 미국, 싱가포르 등 다양한 국가에서 수립하였지만, 2019년까지 범국가적 수준의 AI원칙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였다. AI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제 수준의 합의를 이룬 AI원칙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는 이러한 수요에 맞춰 2019년 5월, 최초로 정부 간 합의를 이룬 AI 권고안(OEC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원칙)을 수립하였다. 신뢰 가능한 AI 구현을 위한 5가지 원칙과 5가지 정책 고려사항으로 이루어진 동 원칙은 2019년 OECD 각료이사회(Ministerial Council Meeting, MCM)에서 회원국 만장일치로 공식 채택되었다.

이에 본 고에서는 2회에 걸쳐 OECD AI원칙을 중심으로 현재 OECD 디지털경제정책 위원회(Committee on Digital Economy Policy, 이하 CDEP)에서 추진 중인 중이 AI에 관한 작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번 호에서는 AI원칙의 추진 경과 및 내용, OECD에서 발간한 AI 분석보고서의 개요를 다루고자 한다. 다음 호에서는 OECD에서

2) OECD (2019a), p.123

3) 한국정보화진흥원(2018)

AI와 관련하여 계획하고 있는 AI원칙 이행을 위한 실용적 가이드라인과 AI 정책저장소(policy observatory)에 대해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국제협력의 중요성과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2. OECD AI 관련 작업

(1) OECD AI원칙

1) 배경 및 경과

OECD CDEP은 2016년부터 AI에 관한 작업을 진행하고 OECD 차원의 AI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2016년 11월에 열린 제73차 CDEP 정례회의에서는 AI 기술전망포럼을 개최하여 AI 분야의 주요 발전 동향 및 어플리케이션, 사회적 파급력, AI 관련 공공정책 등을 주제로 11명이 패널발표를 진행하였다. 연사들은 공통적으로 보건, 교통 등의 분야를 AI 유망 분야로 전망했으며, AI가 일상생활, 고용환경 등 사회 전반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또한 윤리, 프라이버시, 사회 분야로의 통합, AI 기술에 대한 인간의 감정적 저항성 등이 향후 도전과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⁴⁾

2017년 5월에 개최된 제74차 CDEP 정례회의에서는 일본 대표가 자국의 AI 네트워크 사회에 관해 발표하였다. 동 세션에서는 2017년 3월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AI포럼의 결과와 2017년 4월 일본 다카마쓰에서 열린 G7 ICT 장관회의에서 논의된 AI R&D 가이드라인을 소개하였다.⁵⁾ OECD CDEP의 AI에 관한 작업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바, 이후에도 정례회의마다 일본대표는 자국의 AI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소개 및 발표하였다.

4) 73차 CDEP 정례회의 전문

5) 74차 CDEP 정례회의 전문

2017년 10월에는 OECD CDEP의 주관 하에 일본 총무성(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MIC)의 지원으로 OECD 본부에서 AI포럼이 개최되었다. 양일에 걸쳐 진행된 AI 포럼은 크게 2가지 주제로 나누어, AI가 개별 분야에 어떻게 응용되는지 살펴보고, AI 활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규율하기 위한 공공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논의하였다. 디지털경제 부처, 노동부, 우주 관련 부처, 연구 부처, 데이터보호 당국, 소비자 보호 기관 등 다양한 부처에서 동 포럼에 참석하였다.⁶⁾

OECD CDEP은 2018년부터 OECD AI 원칙 수립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였다. 전 세계에서 AI 활용이 증대됨에 따라 설계자, 개발자, 운용자는 물론 정책결정자를 위한 AI원칙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 2018년 5월에 개최된 제76차 CDEP 정례회의에서 사무국은 AI 분석보고서(AI in Society) 초안을 발표하고 회원국들은 AI에 관한 OECD 이사회 권고안 수립을 위해 전문가그룹(The AI expert Group at the OECD, 이하 AIGO)을 창설할 것에 동의했다.⁷⁾ AIGO는 AI원칙 초안(strawman proposal)을 논의하기 위해 결성된 회의체로, 50여 명의 민·관·학·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AI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AI원칙 초안은 개별 기관 및 국가가 수립한 기존의 AI 원칙을 조사·분석하여 작성되었고, AI와 관련된 주제를 유지하면서 OECD 임무(mandate)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AIGO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4차례에 걸친 오프라인 회의를 통해 OECD AI 권고안 초안의 세부내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AI 원칙 수립과 더불어 AI에 대한 정의를 수립하고 AI 생애주기(lifecycle)를 규명하기 위해 산하연구반을 만들어 온·오프라인 회의를 진행하였다. 우리나라는 4차례의 걸친 AIGO 회의는 물론 산하연구반 작업에도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

회원국 대표들은 전문가 차원에서 논의된 AI 권고안 초안을 논의 및 승인하기 위해 2019년 3월 CDEP AI 특별회의를 가졌다. AI 특별회의에서 회원국들은 구체적 내용에

6) OECD (2018)

7) 76차 CDEP 정례회의 전문

대한 자구 수정을 요청하였고, 사무국은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고 구체적 예시와 사례들을 추후에 부속서(companion document)를 만들어 수록할 것을 알렸다. 회원국의 승인을 받은 AI에 관한 이사회 권고초안은 집행위 및 이사회에 회부되어 논의되었으며, 2019년 5월 개최된 OECD 각료이사회(Ministerial Council Meeting, MCM)에서 OECD 차원의 승인을 얻었다.

2) AI 원칙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

AI원칙에 관한 OECD 이사회 권고안(이하 AI원칙)은 2019년 OECD 각료이사회⁸⁾에서 채택되었다. OECD 36개 회원국뿐만 아니라 6개 파트너국(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페루, 루마니아)이 동 원칙을 채택함으로써, OECD AI 원칙은 AI에 관한 세계 최초의 정부 간 표준 협약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19년 6월에 개최된 2019 G20 디지털경제 장관회의에서도 OECD AI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G20 AI원칙이 장관선언문에 수록되었다.

OECD AI원칙은 △전문(preamble), △AI 관련 용어의 정의, △신뢰 가능한 AI 이행을 위한 5가지 일반원칙, 그리고 △국가 정책 및 국제협력을 위한 5가지 정부 권고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⁹⁾

8) 각료이사회(Ministerial Council Meeting)는 OECD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36개 회원국의 고위급 인사와 UN, UNESCO, IMF 등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하여 진행됨

9) OECD (2019e)

AI 관련 용어 정리

- AI 시스템(AI system)
- AI 시스템 수명주기(AI system life-cycle)
- AI 지식(AI knowledge)
- AI 행위자(AI actors)
- 이해관계자(Stakeholder)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관리책무(stewardship) 원칙

- 1.1 포용적 성장, 지속가능한 개발 및 웰빙
- 1.2 인간중심의 가치 및 공정성
- 1.3 투명성 및 설명가능성
- 1.4 견고성(Robustness), 보안성(Security), 안전성(Safety)
- 1.5 책임성(Accountability)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국가 정책 및 국제 협력

- 2.1 AI R&D 투자
- 2.2 AI를 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
- 2.3 AI를 위한 정책 환경 조성 및 지원
- 2.4 인적 역량의 구축과 노동시장 변혁에 대한 대비
- 2.5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국제 협력

상기한 바와 같이 OECD AI 원칙은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5가지 포괄적인 기본원칙과 이러한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정부가 고려해야 할 5가지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기술 이용 격차에 따른 경제 성장 격차가 커지고 불평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함에 따라 OECD AI 원칙은 첫 번째 기본원칙으로 ‘포용적 성장, 지속가능한 개발 및 웰빙’을 제시했다. 동 원칙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인적 역량 증대, 창의력 향상, 소외계층의 포용 증진, 경제·사회적 및 성별 기타 불평등 해소, 자연 환경의 보호

10) 후술할 OECD AI원칙의 세부내용은 OECD (2019c)를 참조하여 작성함

등을 통하여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관리책무에 선제적으로 관여함으로써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개발, 웰빙을 증진하고 인류 및 지구 환경 모두에 이로운 결과를 추구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두 번째로 ‘인간중심의 가치 및 공정성’이다. 동 원칙에서는 AI 활용에 따른 민주주의 가치 및 인권을 훼손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AI 행위자(actors)가 AI 시스템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법규, 인권 및 민주주의 가치를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민주주의 가치 수호에는 자유, 존엄, 자율성, 프라이버시, 데이터 보호, 비차별 및 평등, 다양성, 공정성, 사회정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노동권을 포함하고 있다. 민주주의 가치 수호를 위해 AI 행위자는 이에 부합하는 메커니즘과 보호 장치를 구현할 것을 강조한다.

세 번째로 ‘투명성 및 설명가능성’이다. AI를 통해 도출한 결과를 활용한 의사결정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AI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투명성 및 설명가능성은 항상 이슈로 떠올랐다. OECD AI원칙은 AI 행위자로 하여금 AI 시스템에 관하여 투명성과 책임 있는 공개를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AI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정보, 그 결과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AI 시스템의 예측, 권고 또는 결정에 대한 근거로 쓰인 논리와 요소들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것을 요구한다. 다만 AI원칙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설명가능성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과 설명가능성의 이점 간의 균형, 설명가능성과 정확성 간의 균형을 고려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네 번째로 ‘견고성, 보안성 및 안전성’이다. 견고성, 보안성 및 안전성 원칙은 AI를 활용함에 따라 디지털보안, 물리적 보안 등 다양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립한 원칙이다. 여기서 견고성이란 디지털보안 위험을 포함하여 불리한 조건을 견디거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며, 안전한 AI 시스템이란 물리적 보안을 포함하여 부당한 안전 위험이 제기되지 않는 시스템을 말한다. OECD AI원칙은 견고성, 보안성 및 안전성을 추구하기 위해 ‘추적가능성(traceability)’과 ‘위험관리 접근(risk management approach)’이라는 두 요소를 제시한다. 추적가능성은 AI 시스템의 결과 분석을 가능하게 하고 경우에 따라 질의에 응답해야하는 필요성과 관련된 요소이다. 위험관리 접근은 AI

시스템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시스템의 행동 및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 평가, 우선순위 지정 및 처리할 수 있는 접근방식을 뜻한다. 이를 통해 프라이버시, 데이터 보안, 안전성, 편향 등 AI 시스템 활용에 관한 위험을 해결하고자 한다.

OECD AI원칙은 마지막 기본원칙으로 ‘책임성’을 제시한다. 동 원칙은 조직 또는 개인이 설계, 개발, 운영 또는 구축한 AI 시스템의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적절한 기능을 수행할 책임에 초점을 둔 것으로, AI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과 의사결정 과정에 OECD AI 원칙을 존중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OECD AI원칙은 기본원칙 다음으로 정부 권고사항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권고사항은 ‘AI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다. AI를 활용할 경우 경제·사회적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반대로 AI를 활용하지 못하는 주체와의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OECD 회원국은 물론 세계 모든 국가가 AI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할 것이다. 동 권고사항은 공공정책과 관련된 AI의 사회적, 법적 및 윤리적 함의에 관한 학제 간 연구에 대한 투자를 요청하는 것으로, AI 연구개발의 핵심요소로 프라이버시, 지식재산권 및 기타 중요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개방적이고 접근가능하며 대표적인 데이터세트의 가용성을 꼽는다. 또한 전 세계적 관점에서 AI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상호운용성과 표준 사용을 권고한다. 동 권고사항은 후술할 ‘AI를 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권고사항은 ‘AI를 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이다. AI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초고속 브로드밴드, 컴퓨팅 파워, 데이터 저장소와 같은 물리적 인프라는 물론 상기한 바와 같이 AI 연구개발 촉진, 데이터 공유 메커니즘 등의 제도적 인프라도 필요하다. 동 권고사항은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디지털 생태계의 발전과 접근을 장려할 것을 권고한다. 여기서 디지털 생태계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활동 모두를 아우르는 것으로, OECD AI원칙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정부가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있다.

세 번째 권고사항은 ‘AI를 위한 정책 환경 조성 및 지원’이다. 동 권고사항은 상기한 ‘AI를 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위하여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배포·운영 단계까지 AI 수명주기 전체에 걸쳐 정책 환경을 조성할 것을 권고한다. 정책 환경 조성 방안으로는 정책 및 규제 프레임워크, 평가 메커니즘을 적절히 검토하고 혁신 및 경쟁을 장려할 것을 제시하였다.

네 번째 권고사항은 ‘인적 역량 구축과 노동시장 변혁에 대한 대비’이다. OECD AI원칙 수립을 위한 AIGO포럼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된 사안은 디지털변혁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였다. 일반 사람들이 AI 활용에 따라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이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문이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동 권고사항은 사람들이 AI에 의한 일자리 대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로 하여금 교육 프로그램 제공, 평생교육 시행 확대, 새로운 취업 기회 제공 등을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직장 내에 AI의 책임 있는 사용을 증진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며 기업가정신과 생산성을 장려할 것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권고사항으로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국제 협력’이다. AI 활용에 따른 경제·사회적 영향은 한 국가에 국한해서 나타나지 않는다. 단순한 예로 미국, 유럽 등의 국가에서 AI를 많이 활용하게 될 경우, 텔레마케팅을 아웃소스 받았던 인도의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 또한 AI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는 국경을 넘어서서 활용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에 관한 이슈가 대두되기도 한다. 동 권고사항에서 말하는 국제 협력이란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뿐만 아니라 최빈 개도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 기타 이해관계자를 모두 포함한다. 국제협력을 위한 방안으로는 글로벌 및 지역별 포럼과 협력을 통한 AI 지식 공유, 상호운용성 증대 및 기술 표준 개발 촉진, AI 수준 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 등을 제시하고 있다.

OECD AI원칙은 지금까지 개별 국가 및 기관에서 수립한 AI원칙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다양한 AI원칙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가치를 두고 전문가들이 치열한 논의 끝에 내린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여타 AI원칙들 중에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른 AI원칙과 다르게 정부가 고려해야할 사항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OECD가 국가 간 정책연구 협력기관이라는 점에서 정부 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할 사항을 제시하는 것은 강점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OECD AI원칙은 AI 수명주기를 분석하여, 각 단계마다 AI 행위자가 고려해야하는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정부뿐만 아니라 AI 설계, 개발, 운영자 및 이용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AI 구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AI 분석보고서 발간

OECD는 AI 원칙 수립과 함께 AI에 관한 작업으로 AI 분석보고서(AI in Society)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2018년 상반기에 초안이 작성되었으며, 수정을 거듭하여 OECD AI원칙이 채택된 후 2019년 6월에 정식 발간되었다.

OECD AI 분석보고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¹¹⁾ 1장은 AI 기술 동향으로, AI 동향을 이해하고 관련 정책 이슈 규명에 활용할 수 있는 AI 연구 유형론(taxonomy)을 소개하고 있다. OECD는 AI 연구에 대한 유형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25개의 머신러닝 연구 흐름을 4개의 클러스터(△활용 분야, △머신러닝 기술, △머신러닝 개선 및 최적화 방안, △머신러닝 재맥락화)로 분류하였다.

2장은 AI의 경제 동향 파트로, AI 스타트업 동향 및 통계수치를 제시하고 국가들의 과학 출판물 및 특허 활동을 분석하여 AI 경제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2장의 결론을 요약하면, 현재 AI 스타트업의 투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2011년 3% 미만에서, 2018년 상반기 12%), 미국, 중국, 유럽연합이 전 세계 AI 민간 지분투자의 93%를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3장에서는 AI 적용 및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 동 장에서는 AI 기술을 도입한 △자율주행차량을 포함한 교통, △과학, △헬스케어, △형사사법제도, △보안, △농업, △금융

11) OECD (2019a)

서비스, △마케팅 및 광고, △증강/가상현실 분야 등 9개 분야를 검토하고, 분야별 정책 기회 및 도전과제를 규명하고 있다.

4장은 공공정책 고려사항으로, OECD에서 2년간 진행한 고잉디지털 프로젝트(Going Digital Project)¹²⁾의 최종 결과물인 통합된 정책 프레임워크(integrated policy framework)의 7가지 차원(△접근성, △활용, △혁신, △직업, △사회, △신뢰, △시장개방성)을 토대로 AI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AI의 도전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국가 및 기관의 AI 이니셔티브/원칙들을 소개함으로써 AI 정책 동향을 살피고 있다. 동 장에서는 AI 특화 전략을 보유한 국가(캐나다, 중국, 프랑스, 인도, 스웨덴, 영국)와 포괄적 전략 내 AI 행동 계획을 포함한 국가(덴마크, 일본, 영국)의 사례를 검토한다. 또한 국가 간 협의체의 주요 AI 활동, 전기전자기술협회(IEEE), MIT 미디어랩 등 파트너십 기관의 AI 이니셔티브 및 원칙을 소개하고 있다. 조사 결과, AI 관련 이니셔티브는 공통적으로 인간의 가치 및 인권, 비차별, 인식 및 통제, 데이터 접근, 프라이버시 및 통제, 안정성 및 보안, 역량, 투명성 및 설명가능성, 책임성 및 책무성, 사회담론, 측정 등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OECD AI 분석보고서는 OECD에서 진행하고 있는 AI 관련한 전반적 내용을 다룬 최초의 보고서로, 이후 AI와 관련하여 진행될 작업인 AI 원칙 이행을 위한 실용적 가이드라인에 참조되었으며 AI 정책 저장소 구축에 활용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향후 계획 및 활동에서 후술하기로 한다.

12) OECD는 디지털 변혁(Digital Transformation)이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정책 권고 및 모범사례 제공을 위하여 OECD내 과학·ICT, 고용, 교육, 경쟁 등 14개 위원회가 공동 참여하는 협업과제('17~'18년)를 추진

〈참고문헌〉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신뢰 가능 AI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 IT & Future Strategy, 2019-2호.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8). 지능정보사회 윤리 가이드라인.
- OECD (2018). AI: Intelligent Machines, Smart Policies. DSTI/CDEP(2018)8
- _____ (2019a). Artificial Intelligence in Society. OECD publishing.
- _____ (2019b). Implementing Going Digital Phase II: a Proposed Way. DSTI/CDEP/GD(2019)3
- _____ (2019c). Preliminary Orientations for Practical Guidance for the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Artificial Intelligence. DSTI/CDEP (2019)4
- _____ (2019d). Proposal for the OECD AI Policy Observatory. DSTI/CDEP (2019)5
- _____ (2019e).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Artificial Intelligence. C/MIN(2019)3/FINAL
- _____ (2019f). Scoping Principles to Foster Trust in and Adoption of AI. DSTI/CDEP(2019)1
- _____ (2019g). The Digitalisation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Key Developments and Policies. DSTI/STP(2019)16